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18
----------	-------

발의연월일 : 2026. 2. 5.

발 의 자 : 박정하 · 김대식 · 김은혜
우재준 · 조은희 · 김형동
백종헌 · 김승수 · 진종오
정연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 현장은 악성 댓글과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불규칙한 근무환경, 직장 내 괴롭힘과 갈등, 과도한 업무 부담 등 복합적인 스트레스 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우울 · 불안 등 정신건강 악화와 극단적 선택의 위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위험은 대중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매니저, 제작스태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 등 현장 종사자 전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관련 지원은 주로 지원센터 등의 일회성 · 임의적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지원 체계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소속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자,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심리상담사를 두거나 외부 전문기관·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심리상담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정신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상담) 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대형대중문화예술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대형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소속된 대중문화예술인
2. 대형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인
3. 대형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

② 대형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사를 두거나 외부 전문기관 또는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심리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의 대상·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사의 배치기준·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7조의2(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상담) 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대형대중문화예술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u> <u>1. 대형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소속된 대중문화예술인</u> <u>2. 대형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인</u> <u>3. 대형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u> <u>② 대형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심리상</u>

답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
사를 두거나 외부 전문기관 또
는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심리
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의
대상 · 방법 ·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사의 배치기준 ·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